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417
----------	------

2026년 3월 10일  
교육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년 2월 9일, 이효원 의원 등 26명
2. 회부일자 : 2026년 2월 12일
3. 상정일자 :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 
(2026년 3월 10일 상정, 수정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효원 의원)

##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청대문 암행단 사업 등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의 '찬조금' 행태는 여전히 음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.
- 이에 학교운동부의 청렴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비리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앞장서고, 학교운동

부의 건전한 운영 및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교육 현장 내 청렴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금품등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제5호)
- 청렴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6년 2월 9일 이효원 의원 등 26명에 의해 의안 번호 제3417호로 발의되어 2026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.
-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운동부의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 및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음.

#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# 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였음.<sup>1)</sup>

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아왔으며, 특히 운동부 운영 분야에서는 최근 3년간 부패경험률과 경험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.

1) 서울시교육청 청렴도평가 2등급...전체 공공기관 평균 상회(2025.12.28. 연합뉴스)

[그림-1]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종합청렴도 점수(등급) 추이



[표-1] 최근 3년간 청렴체감도 평가 중 '운동부 운영 외부체감도' 평가<sup>2)</sup>

업무분야	연도	외부체감도	부패인식 (100점 만점)	부패경험(감점요인)	
				부패경험률(%)	부패경험빈도(회)
운동부 운영	2022	78.6	93.6	1.85	0.042
	2023	75.9	90.5	2.22	0.044
	2024	75.6	90.6	3.57	0.098

○ 또한 최근 학교운동부와 관련한 불법찬조금 사례가 여전히 적발되고 이에 따른 징계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여전히 운동부 운영 분야의 청렴도 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.

[표-2] 최근 3년간(2023~2025) 불법찬조금 적발 및 조치 현황

연도	급	계약구분	종목	징계	사유
2023	고	전임코치	양궁	감봉	폭력(폭언), 별도계좌 운영, 장비 판매
	고	일반코치	야구	감봉3개월	학교운동부 운영 소홀(동계전지훈련 승인 내용 미준수, 학교회계 절차 미준수)
	고	일반코치	아이스하키	감봉1개월	학생선수에 대한 욕설, 명절선물 수수 등
	고	일반코치	아이스하키	견책	선물 수수 등
	고	일반코치	아이스하키	정직3개월	금품수수(현물, 향응 등), 승인받지 않은 입학예정자 포함 전지훈련 실시, 폭력행위, 사전스카우트 등
	고	일반코치	아이스하키	정직1개월	금품수수(금품, 향응 등) 등
	중	전임코치	태권도	경고	학부모간 학생간식비 각출 및 입학 예정 학생선수(전지)훈련 참가
	고	일반코치	야구	경고	스승의 날 선물 수수, 설날 명절음식 및 세배돈을 받아 전달함
	고	일반코치	야구	주의	스승의 날 선물 수수, 설날 명절음식 및 세배돈을 받아 전달함
2024	고	전임코치	복싱	감봉1개월	부정청탁 관련 부적절한 언행
	고	일반코치	축구	정직1개월	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소홀, 청탁금지법 위반

2) 2025년 서울시교육청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

연도	급	계약구분	종목	징계	사유
	중	일반코치	아이스하키	정직3개월	미인정 보조코치 부정 채용, 학부모 불법 찬조금 조성, 접대 및 향응
	중	일반코치	아이스하키	견책	미인정 보조코치 부정 채용, 학부모 불법 찬조금 조성, 접대 및 향응
	고	전임코치	축구	해고	축구부 운영비, 훈련비, 장학금 면제를 조건으로 개인계좌로 입금 받음
	고	일반코치	배구	정직1개월	학부모에게 금품 수수
	초	전임코치	축구	정직3개월	복종의무위반, 청렴의무위반, 품위손상 등
	초	일반코치	축구	견책	명령 복종 의무 위반, 허위체험학습 참여 목인
2025	고	일반코치	아이스하키	견책	불법찬조금 조성 목인, 사설업체 유착
	고	일반코치	아이스하키	견책	불법찬조금 조성 목인, 사설업체 유착
	고	전임코치	복싱	주의	회계관리 부적정
	초	전임코치	축구	정직3개월	회계비위, 학교 내 불법 숙직, 향응제공(음주, 식사), 무허가 지도자 지도허용(자녀)
	초	전임코치	축구	견책	청렴의무 및 성실의의무 위반(불법자금 조성 및 편의제공, 복무위반 등)
	고	일반코치	야구	주의	학교회계지침 위반 및 편의제공
	고	일반코치	야구	주의	학교회계지침 위반 및 편의제공
	고	일반코치	야구	주의	학교회계지침 위반 및 편의제공
	고	일반코치	야구	주의	학교회계지침 위반 및 편의제공
	고	전임코치	농구	경고	청탁금지법 위반
	중	전임코치	레슬링	해임	청렴의무 및 성실의의무 위반(불법자금 조성 및 편의제공, 복무위반 등)
	초	전임코치	배구	정직3개월	학교운동부관리규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
	초	전임코치	축구	정직1개월	학교운동부관리규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, 검직 위반
	초	전임코치	축구	정직2개월	학교운동부관리규정 위반 및 성실의 의무 위반, 학교회계 지침 위반
	초	전임코치	에어로빅	해고	학교운동부관리규정 위반 및 청렴의 의무 위반, 불법자금 조성 검직절차 위반 등
	중	전임코치	하키	정직1개월	학교운동부관리규정 위반 및 금품 및 향응 수수
	초	전임코치	유도	정직1개월	학교운동부관리규정 위반 및 청렴의 의무 위반, 복무위반 및 불법자금 조성, 학교회계지침 조성 등
	초	전임코치	축구	해고	학교운동부관리규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, 검직 위반
	초	일반코치	축구	감봉1개월	학교운동부관리규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, 검직 위반
	초	일반코치	축구	견책	학교운동부관리규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, 검직 위반

○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바,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운동부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.

## 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### 1) 정의(안 제2조)에 대한 검토

- 안 제2조제5호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청탁금지법’) 제2조제3호<sup>3)</sup>를 인용하여 “금품등”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.
- 인용된 「청탁금지법」은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, 동 법률에서는 “금품등”은 단순한 금전뿐만 아니라 물건, 편의 제공, 경제적 이익 등 재산상 이익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.
- 또한 「청탁금지법」의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으로 학교도 이에 포함되어 동 법의 적용을 받는바<sup>4)</sup>, 동 개정조례안이 「청탁금지법」상의 “금품등”의 정의를 인용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정의 편의성 및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2) 청렴 문화 조성(안 제10조)에 대한 검토

- 안 제10조는 금품 등의 요구·제공에 대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

3)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3. “금품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

나. 음식물·주류·골프 등의 접대·향응 또는 교통·숙박 등의 편의 제공

다. 채무 면제, 취업 제공, 이권(利權) 부여 등 그 밖의 유형·무형의 경제적 이익

4)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1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가.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
나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

다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기관

라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

마.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

신고 의무를 부과하고(제1항) 학생선수 및 학부모에게는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(제2항), 학생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청렴연수 실시와 관련한 교육감의 책무(제3항) 및 학교운동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(제4항)를 규정하고 있음.

○ 학교(법인)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「청탁금지법」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학교(법인)의 직원으로서 동 법의 적용 대상인 ‘공직자등’에 해당하는 반면, 학생선수 및 학부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신고 의무는 부과되지 않음.

- 이러한 점에서 「청탁금지법」의 체계에 맞추어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는 금품 등의 요구·제공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, 학생선수 및 학부모에게는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.

- 다만,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「청탁금지법」 제9조는 신고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, 신고 대상의 적용범위를 공직자 뿐만이 아닌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.<sup>5)</sup>

- 그러나 안 제10조제1항과 제2항은 신고 대상의 적용범위를 학교운동부지도자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, 이는 상위법보다 신고 대상이나 절차를 축소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정한 의무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,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.

- 따라서 본 조항은 「청탁금지법」 제9조에서 정한 신고 방법을 명확히 하고 신고 대상의 범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

5)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)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
1.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
2.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

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-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또한 동일한 의견을 제출하였음.(행정관 리담당관-2277, 2026.2.20.)

- 한편, 「청탁금지법」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<sup>6)</sup>,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조성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<sup>7)</sup>.

[표-3] 최근 3년간(2023~2025) 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 대상 청렴교육 실시 현황

연번	부서	연수일시	장소	대상	참석인원	내용	방법
1	체육건강예술교육과	2023.12.11.	상문고	운동부 학부모	331	운동부 관련 청렴교육	집합
2	체육건강예술교육과	2024.11.25.	디노체 컨벤션	운동부 학부모	1,400	운동부 관련 청렴교육	집합
3	체육건강예술교육과	2025.7.15.	이화외고	운동부 지도자 및 학부모	1,200	운동부 관련 청렴교육	집합
4	체육건강예술교육과	2025.7.~8.	별도	운동부 지도자 및 학부모	1,000	찾아가는 운동부 학부모 교육	집합
5	체육건강예술교육과	매년 4월경	별도	운동부 지도자	680	운동부 운영 안내	집합 또는 온라인
6	체육건강예술교육과	매년 8월, 1월	별도	운동부 지도자 및 학부모	1,000	운동부 운영 컨설팅 및 점검	대면
7	감사관	연중	카카오톡		2,726	불법찬조금 관련 청렴소식 배포	카카오톡
8	감사관	연중	카카오톡		2,706	불법찬조금 관련 청렴소식 배포	카카오톡
9	감사관	2025.1.17.	가정통신문	교직원 및 학부모	-	불법찬조금 근절	가정통신문
10	감사관	연중	가정통신문	운동부 학부모	-	불법찬조금 근절	가정통신문

6)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

제19조(교육과 홍보 등)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.

7)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(容認)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-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「청탁금지법」 및 관련 지침<sup>8)</sup> 등에 따라 학교 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청렴연수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, 학교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.
- 따라서 안 제10조제3항과 제4항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청렴 정책 의지를 조례 차원에서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- 그러나 「청탁금지법」 제19조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인 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, 동 조례안은 청렴 교육 및 연수 실시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청렴도 수준과 특히 학교운동부 운영 분야의 현실을 고려할 때, 현행과 같이 완화된 규정으로 두기 보다는 교육감에게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 대상 청렴 교육·연수 실시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 또한 동일한 의견을 제출하였음.(행정관리담당관-2277, 2026.2.20.)

---

8)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(매년 발행, 체육건강예술과),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(매년 시행, 감사관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

- 신고대상을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수정함(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).
-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 대상 청렴교육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함(안 제10조 제3항).

VII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417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년 3월 10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상위법인 「청탁금지법」은 신고대상의 범위가 공직자등의 배우자까지 이고, 신고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,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신고대상을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, 신고방법을 명시하고자 함.

또한 안 제10조제3항의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 대상 청렴교육 실시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신고대상을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수정함(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).
-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 대상 청렴교육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함(안 제10조 제3항)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1항 중 “학생선수 및 학부모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 
하기로 약속하는” 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 으로, “해당  
사실을 학교의 장에게 신고” 를 “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”  
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자신이 학생선수, 학부모,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받거  
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
2. 자신의 배우자가 학생선수, 학부모,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 
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

안 제10조제2항 중 “학생선수 및 학부모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금품등” 을  
“학생선수, 학부모,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교운  
동부지도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실시할 수  
있다” 를 “실시하여야 한다” 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0조(청렴 문화 조성) ① 학교운동부지도자는 <u>학생선수 및 학부모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해당 사실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② <u>학생선수 및 학부모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기</u></p>	<p>제10조(청렴 문화 조성) ① 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----- ----- ----- <u>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---</u>.</p> <p>1. <u>자신이 학생선수, 학부모,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</u></p> <p>2. <u>자신의 배우자가 학생선수, 학부모,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</u></p> <p>② <u>학생선수, 학부모,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교운동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>로 약속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</p> <p>③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과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 교육 및 연수를 <u>실시할 수 있다</u>.</p> <p>④ (생략)</p>	<p><u>부지도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</u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실시하여야 한다</u>.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금품등”이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청렴 문화 조성) ①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자신이 학생선수, 학부모,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
2. 자신의 배우자가 학생선수, 학부모,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

② 학생선수, 학부모,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과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의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 · 제11조 (생략)</p>	<p><u>또는 학교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과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의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1조 · 제12조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</p>